

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안 번호	22-6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

나.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 근거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

2) 추진 필요성

-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,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 필요함
- 광고디자인, 생활과학, 옥외광고 관련 법규, 설계 및 시공 등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강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교육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무

종류	교육시간 (연간)	교육내용	교육대상	비고
신규교육	6시간	- 관계법규 - 표시에 관한 사항	-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※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	- 신규교육비: 50,000원
행정처분에 의한 교육	3시간	- 관계법규	-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	- 보수교육비: 30,000원 (옥외광고사업자가 협회에 교육비 지급)
보수교육	3시간	- 관계법규	- 옥외광고사업자(대표자) ※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	

라. 위탁기관 개요

1) 위탁기관

단체명	대표자	소재지	전화번호	인력 현황
(사)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	한상선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(신천동, 한국광고문화회관)	02-882 -9500	직원: 7명 강사: 8명

2) 교육실적

(단위: 명)

실시연도	교육구분	교육 참석자		비고
		서울시 전체	마포구	
2019	신규교육	137	7	
	보수교육	2,367	128	
	합 계	2,504	135	
2020	신규교육	62	2	
	보수교육	2,190	136	
	합 계	2,252	138	
2021	신규교육	47	3	
	보수교육	2,148	112	
	합 계	2,195	115	

3) 교육시설 확보 현황

구분	수량 및 수용인원	비고
강의실1	100명	한국광고문화회관 7층
강의실2	440명	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외
프로젝트 빔	2세트	강의실 자체 비치
노트북	2개	
음향장비(스피커 포함)	1세트	강의실 자체 비치
복사기	2개	
팩스	2개	
전화기	3개	

4) 타 자치구 위탁 현황 : 25개 자치구 모두 (사)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

마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 및 기간

1)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(2021. 5. 6. 일부개정, 2022. 1. 1. 시행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) 위탁기간 : 2022. 8. 1. ~ 2025. 7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2004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비예산(옥외광고사업자가 직접 위탁기관에 납부)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.
- 2) 서울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음.
- 3)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교육 사무를 위탁하여 옥외광고사업자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자. 추진 과정

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<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>

제12조(광고물등에 관한 교육)

-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·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·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④ 시장등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, 자격,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>

제50조(교육의 위탁 등)

-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.
-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, 수강절차,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>

제22조(교육의 위탁 등)

-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,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자의 임무,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,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, 위탁받은 자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주소,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-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성과평가)

-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